

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예비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'99. 12. 14 동두천시장이 제출

나. 회부일자 : '99. 12. 20

다. 상정일자 : 제91회 동두천시의회 정기회

제3차 본회의 상정

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, 제안설명, 질의답변

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,3차 회의, 토론

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예비심사보고서 채택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와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통합 운영하려고 동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“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” 및 “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” 각각 폐지하고 동 조례로 통합함.
- 기금조성의 재원을 정함.
- 기금 운용관리 방법을 정함.
- 기금의 사용 용도를 정함.
- 재난관리기금 용자조건을 정함.
- 회계공무원을 정함.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함.
- 기금의 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본 조례는 종전의 동두천시 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 조례와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를 폐지하여 동조례를 통합하는 것으로 투명한 회계관리와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 
“ 생 략 ”

5. 토 론 요 지  
“ 생 략 ”

6. 심 사 결 과  
“ 원안가결 ”